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1
----------	------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행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써
- 나. 조례 개정안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대상 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체의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 및 정비하는 사항임
- 다. 또한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1)
- 나.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교통유발계수 상향 범위를 명시하고자 함(안 별표 2 비고 3)
- 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기한을 8월 10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발생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6. 4. 7. ~ 4. 27.) 결과: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 노리라(☎ 2133-222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제1조 (목적)”을 “제1조(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나눔카 이용 : 시장이 지정한 공동이용 자동차 이용을 유도하는 것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3항”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24조제6항”을 “영 제24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6항”을 “영 제24조제7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8월10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확인, 경감비율의 결정 및 통지”를 “확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1호 중 “별표 3에서”를 “이 표에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별표 2에서”를 “이 표에서”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규칙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a≥80%</td> <td>a≥100%</td> <td>a≥130%</td> </tr> <tr> <td>경감률(b)</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구분	a≥80%	a≥100%	a≥130%	경감률(b)	10%	20%	30%	○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구분	a≥80%	a≥100%	a≥130%								
	경감률(b)	10%	20%	30%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frac{\text{변경 전 주차면수} - \text{변경 후 주차면수}}{\text{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 부담금 30% 경감			○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50% 경감 ※ 단, 각종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 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주차정보공시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 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 해당 연도만 경감	○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률 = $\frac{\text{자전거 이용 종사자수}}{\text{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유연근무제	종사자 (50인 이상)	○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 경감산정 :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 참여율(a)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a≥30%</td> <td>a≥40%</td> <td>a≥50%</td> </tr> <tr> <td>경감률</td> <td>10%</td> <td>15%</td> <td>20%</td> </tr> </table>	구분	a≥30%	a≥40%	a≥50%	경감률	10%	15%	20%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구분	a≥30%	a≥40%	a≥50%									
경감률	10%	15%	20%									
통근버스영	종사자 (100인 이상)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 내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 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table border="1"> <tr> <td>일평균 총운영횟수</td> <td>10회 이상</td> <td>20회 이상</td> <td>30회 이상</td> <td>40회 이상</td> <td>50회 이상</td> </tr> <tr> <td>경감률</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td> </tr> </table>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업 택 시 제	종사자	○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20% 범위 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나 눔 카 이 용	종사자 이용자	○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을 제공하고 나눔카 이용 시 이용금액의 50% 경감	○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기 타	종사자 이용자	○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 경감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		
	승용차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시행방법 :
		2 부 제	30		
	주차요리	주유차료장화	30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시간 : 징수방법: 무료주차면수 :
		주차장소	50		기존 주차면수 : 축소 예정 주차면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여부 : 법정 주차면수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자 전 거 이 용		20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승용차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수관차요리	주차장유료화	30				
		주차장축소	5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자 전 거 이 용		20				
	유 연 근 무 제		20				
	통 근 버 스 운 영		25				
	셔 틀 버 스 운 영		15				
	업 무 택 시 제		20				
나 늠 카 이 용		10					
기 타		10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구청장 (인)</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 <p>가. ~ 사. (생략)</p> <p><신설></p> <p>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의 조정) ①·② (생략)</p> <p>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 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p> <p>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 위)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p>	<p>제1조(목적) ----- ----- 시행령 과 시행규칙----- -----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u>나눔카 이용 : 시장이 지정 한 공동이용 자동차 이용을 유도하는 것</u></p> <p>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u>」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조의3제3항----- ----- -----.</p> <p>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 위) 영 제24조제7항-----</p>

금 경감대상시설물(이하"교통수
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요관
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
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
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
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
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
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
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자치구별로 경감심의위원회

-----.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
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

-----.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

----- 8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를 둔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4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이행여부 확인, 경감비율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5. (생략)

-----.

1. 제2조제4호-----

2.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확인-----

5.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 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생략)	○(생략)										
	5부제 종사자 이용자	○(생략)											
	2부제 종사자 이용자	○(생략)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 이상 의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 주차요금/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a≥100%</td> <td>a≥110%</td> <td>a≥120%</td> <td>a≥130%</td> </tr> <tr> <td>경감률(b)</td> <td>10%</td> <td>15%</td> <td>20%</td> <td>30%</td> </tr> </table>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생략)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 <신설>	○(생략) <신설>								
○주차면수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20%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종사자 (100인 이상)	○(생략)	○(생략)										
유근무제	종사자 (100인 이상)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개 정 안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 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부제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2부제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 80퍼센트 이상 의 주차요금을 징수 - <삭제>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 주차요금/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a≥80%</td> <td>a≥100%</td> <td>a≥130%</td> </tr> <tr> <td>경감률(b)</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구분	a≥80%	a≥100%	a≥130%	경감률(b)	10%	20%	30%	○(현행과 같음)
		구분	a≥80%	a≥100%	a≥130%						
		경감률(b)	10%	20%	30%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현행과 같음)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 부담금 30% 경감 ○주차면수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50% 경감 ※ 단,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현행과 같음)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내						
○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 해당 연도만 경감	○(현행과 같음)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 해당 연도만 경감	○(현행과 같음)								
자전거	종사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근무제	종사자 (50인 이상)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	--	--	-------	--	--	--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경우 제외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경우 제외 ○경감산정 :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 참여율(a)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tr> <td>구분</td> <td>a≥30%</td> <td>a≥40%</td> <td>a≥50%</td> </tr> <tr> <td>경감률(b)</td> <td>10%</td> <td>15%</td> <td>20%</td> </tr> </table>	구분	a≥30%	a≥40%	a≥50%	경감률(b)	10%	15%	20%	
구분	a≥30%	a≥40%	a≥50%												
경감률(b)	10%	15%	20%												
통근버스영	종사자 (100인 이상)	○(생략)	○(생략)	통근버스영	종사자 (100인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셔틀버스영	종사자 이용자	○(생략)	○(생략)	셔틀버스영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무택시	종사자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 (부담금 20% 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업무무택시	종사자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 (부담금 20% 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현행과 같음)								
		<신설>		나눔카이용	종사자 이용자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을 제공하고 나눔카 이용 시 이용금액의 50%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생략)	○(생략)	기타	종사자 이용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생략)

비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2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3. <신설>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비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이 표에서

2. 이 표에서 -----

3. 법 제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43조제2호에 따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3.8.1)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대)	기계식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계	100%				
	승차부제	요일제	20		시행방법 :	
		5부제	20			
		2부제	30			
	주차관리	주차장유화	20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정수시간 : 징수방법: 무료주차면수 :	
		주차장축소	30		기존주차면수 : 축소예정주차면수:	
		주차도시스템	20			
	자전거이용	20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개 정 안

큰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규칙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대)	기계식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계	-				
	승차부제	요일제	20		시행방법 :	
		5부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주차관리	주차장유화	30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정수시간 : 징수방법: 무료주차면수 :	
		주차장축소	50		기존 주차면수 : 축소 예정 주차면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여부 : 법정 주차면수 :	
		차량정보시스템	10			
	자전거이용	20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현 행

--	--	--	--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프그 로 램	최 대 경 감 (%)	신 장 여 부	세부사항
유연근무 제	20		출근시간 : 시 (명) 스마트워크센터 : 명 재택근무 : 명 기타 유연근무 : 명
통근 버스 운영	25		운영대수 : 대 (총좌석수 석) 총 종사자수 : 명 운영방법 : 출근운영 / 퇴근운영 / 출·퇴 근운영
셔틀 버스 운영	15		운영대수 : 대 (총 좌석수 석) 운영횟수 : 회, 운영노선수 : 개 운영시간 :
업무 택시 제	30		운영방법 : 계약업체 :
< 신 설 >			
기타	20		

교통량 감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
지 (월간)

교통량 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개 정 안

--	--	--	--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프그 로 램	최 대 경 감 (%)	신 장 여 부	세부사항
유연근무 제	20		출근시간 : 시 (명) 스마트워크센터 : 명 재택근무 : 명 기타 유연근무 : 명
통근 버스 운영	25		운영대수 : 대 (총좌석수 석) 총 종사자수 : 명 운영방법 : 출근운영 / 퇴근운영 / 출·퇴 근운영
셔틀 버스 운영	15		운영대수 : 대 (총 좌석수 석) 운영횟수 : 회, 운영노선수 : 개 운영시간 :
업무 택시 제	20		운영방법 : 계약업체 :
나눔 카 이용	10		계약업체 :
기타	10		

교통량 감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
지 (월간)

교통량 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8.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유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 주 식 기 계 식 대)		종사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주업 체 수			
	핸드폰		업무담 당 자			
감 축 방 안	프 로 그 램	최대 경감 (%)	이행계 획서 신청내 용	경감신청	비고	
	계		100%			
	승용차 부 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차수 관 리	주차장 유 화	20			
		주차장 축 소	30			
		주차유도시 스템	20			
	자 전 거 이 용	20				
	유 연 근 무 제	20				
	통 근 버 스 운 영	25				
	셔 틀 버 스 운 영	15				
	업 무 택 시 제	30				
	< 신 설 >					
	기 타	20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월간)				
교 통 량 감 축 세 부 이 행 실 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 지 작성 첨부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자) 소속		직위	신고인 (대표)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유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 주 식 기 계 식 대)		종사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주업 체 수			
	핸드폰		업무담 당 자			
감 축 방 안	프 로 그 램	최대 경감 (%)	이행계 획서 신청내 용	경감신청	비고	
	계		-			
	승용차 부 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차수 관 리	주차장 유 화	30			
		주차장 축 소	50			
		주차정보제 공 시스템	10			
	자 전 거 이 용	20				
	유 연 근 무 제	20				
	통 근 버 스 운 영	25				
	셔 틀 버 스 운 영	15				
	업 무 택 시 제	20				
	나눔카 이용 10					
	기 타	10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월간)				
교 통 량 감 축 세 부 이 행 실 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 지 작성 첨부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자) 소속		직위	신고인 (대표)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3.8.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면 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자 주 식 기 계 식 대)		소 유 분 종 사 자 수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사무실	FAX	입 업 수	주 체		
연 락 처	핸드폰		업 담 자	무 당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100%					
승용차부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차요리	주차장유화	20					
	주차장축소	30					
	주차유도시스템	20					
자전거 이용		2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30					
< 신 설 >							
기 타		20					
장기간 공공사업		50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구청장 (인)</p>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면 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자 주 식 기 계 식 대)		소 유 분 종 사 자 수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사무실	FAX	입 업 수	주 체		
연 락 처	핸드폰		업 담 자	무 당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승용차부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차요리	주차장유화	30					
	주차장축소	50					
	주차정보공제시스템	10					
자전거 이용		2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20					
나눔카 이용		10					
기 타		10					
장기간 공공사업		50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구청장 (인)</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삭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면수	총 대 (자 주 식 기 계 식 대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 지자체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승차부 제	10부제	10		시행방법 :
		요일제	20		
		5부제	20		
		2부제	30		
	종사자 승용차 제한		20		참여종사자수 : 인
	차 요금 관리	주 차 장 화	20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시간 : 징수방법: 무료주차면수 :
		주 차 장 소	30		기존주차면수 : 축소예정주차면수:
		주 차 장 화	20		
대 중 교통 이용 자 조 금 지	종 사 자	10		지 급 액 : 1인당 월 원 (총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 법 :	
	이 용 자	30		운영방법 :	
자 전 거 이 활 화	자 전 거 소 등 설 치	20		구입내용 : 구입시기 :	
	자 전 거 이	10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시설물 소유주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써, 일부 프로그램을 개정하여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노리라